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3. 5. 27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5. 27

다. 상정일자 : 제11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3. 6. 3)

## 2. 제안설명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잡종재산 매각대금 납부 및 공유재산의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거(2002.11.29)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유율 10년이내 기간은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, 5년이내 기간은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인하함.  
(안 제22조제1항, 동조제2항)
-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대상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.(안 제23조의2)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연15퍼센트에서 연체기간별로 연12~15퍼센트로 차등적용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로 상한설정.  
(안 제28조제1항)

- 매각대금 분할납부,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,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에 대한 적용시기를 부칙에 명시

### 3.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 제83조, 동법시행령제84조, 제91조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잡종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후 (2002.11.29) 이와 관련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위해 개정안 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키포인트는 제22조, 제28조의 이자율을 5%→4%로, 8%→6%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15%→기간별 연12~15%로 차등적용하므로서 사실상 인하하는 것과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며,
-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을 현실과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부칙을 새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
-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5. 결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